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학교 지원 및 관리 강화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82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사유 강화	3
2.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8
3.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의무 규정	10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2. 24.
3. 회 부 일 : 2026.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 협력업체 근무자, 현지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장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면서 국가가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는 만큼 재외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 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25조 및 제31조의2).

Ⅲ. 검토의견

1.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사유 강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한국학교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여,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이 법의</u>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u>이 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의</u> ----- ----- --
<신설>	4. <u>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u>
<신설>	5. <u>교육부장관의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u>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재외국민교육법」은 학교법인 중 이사회 구성, 기능 등 절차적인 부분, 회계연도 등 재산과 회계에 관한 부분, 교원의 징계 종류, 시효 등에 대한 부분에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여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에 대한 부분은 직접 규정함.

[재외국민교육법의 사립학교법 준용 조항]

재외국민교육법 조항	사립학교법 준용 조항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중,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제20조(준용규정)	• 제2장 학교법인 중, 제3절 기관 - 제15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기능)제2항,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9조(임원의 직무),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제1항 • 제2장 학교법인 중, 제4절 재산과 회계 - 제30조(회계연도),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제1항 및 제2항,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중,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제26조(징계)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중, 제3절 징계 -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제1항 준용

□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는 ① 시정 요구 후 승인 취소와 ② 시정 요구 없는 승인 취소으로 구분되는데, 현행 「재외국민교육법」에서 ② 시정 요구 없는 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① 시정 요구 후 승인 취소는 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한국학교에 부합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① 시정 요구 후 승인 취소 사유로, (제3호) 「재외국민교육법」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의 규정 위반 또는 명령 미이행’, 을 추가하고, (제4호)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를 규정하는 한편, (제5호) 교육부장관의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를 추가함.¹⁾

1) 「재외국민교육법」

제26조(징계) ①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보다 강화된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추가될 경우, (제4호) 재판 또는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회계 부정 등의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에 따라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5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의 징계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과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3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에 설립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²⁾ 소재국의 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외국민

② 한국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장을 거쳐 그 임면권자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재외국민교육법」

제8조(교육과정) 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의2(수업 등) 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학력의 인정)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23조(교원의 자격)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장”은 “학교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외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소재국의 교원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교육법」을 적용하고 있으나,³⁾ 개정안은 예외없이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 후 승인 취소 관련 비교]

「재외국민교육법」 현행 및 개정안	현행 「사립학교법」
• 제15조(임원의 승인 등)제3항 본문 -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구 1. 임원이 한국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하여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에 손해를 준 경우 2. 학교장을 제외한 임원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행정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5. 교육부장관의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정한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관장 의견 받아 임원 취임승인 취소 가능	•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제1항 및 제2항 본문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관할청은 시정 요구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가능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임원의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려는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한국학교는 소재국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초·중등교육법」상 모든 규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강제할 경우 소재국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재외국민교육법」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

2.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장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① -----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신설>	②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25조제2항에서 학교장이 한국학교의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이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법 제25조제1항에 한국학교 교직원의 연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부장관이 주관하는 해당 연수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한국학교의 목적에 맞추어, 한국학교에 국내 교육과정을 안착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한국학교 교직원 연수 현황]

연수과정명	시수	시기	방법	인원	대상
교원 역량강화 연수	23	'25.7.	집합	66명	초·중등교원
행정직원 역량강화 연수	10	'25.10.	집합	30명	행정실장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연수	2	'25.3.	온라인	56명	중등교원
고교학점제 지원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관리·수업교사 나이스 연수	2	'25.6.	온라인	30명	중등교원
학교급별 나이스 사용자 교육	6	'25.4.	온라인	126명	초·중등교원
학교급별 학교 자율시간 연수	2	'25.12.	온라인	101명	초·중등교원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법 연수	2	'25.6.	온라인	12명	희망교원
나이스 현장 연수	10	'25.8.	현지방문(소주,무석)	46명	초·중등교원
	10	'25.11.	현지방문(동경)	25명	초등교원
교육과정 컨설팅	10	'25.5.	현지방문(프놈펜)	28명	교직원
	10	'25.10.	현지방문(엔타이)	60명	교직원

주: 2025년 실시된 연수 기준

자료: 교육부

□ 개정안은 학교장이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한국학교별로 필요한 연수가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한국학교 교직원의 해당 연수 이수를 통해 한국학교에서의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의무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한국학교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 ----- ----- -----

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 -----지원하여야 한다.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31조의2에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은 제3조에서 국가가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제31조에서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 제31조의2에서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현행법은 이와 같은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모두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학급 수, 교원 수 감소가 한국학교의 재정적 어려움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⁴⁾ 제31조의2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

4) [한국학교 학생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유	초	중	고	합계	증감
2021	532	6,218	3,344	3,697	13,791	38
2022	505	6,057	3,324	3,733	13,619	△172
2023	469	5,924	3,340	3,761	13,494	△125
2024	463	5,677	3,329	3,868	13,337	△157
2025	396	5,489	3,482	3,897	13,264	△73

주: 각 연도 4월 1일 기준
자료: 교육부

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조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현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한국학교 예산 지원 관련 조항]

「재외국민교육법」 제3조(국가의 책무)제2항	
• 국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재외국민교육법」 제31조(국고지원)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8조(예산지원기준)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 기관의 재정상태,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예산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함 * 교육수요: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 • 한국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 지원기준 -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 총 비용의 50% -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 총 비용의 70 *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서,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한국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재외국민교육법」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한국학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학하는 한국학교 - 한국학교 소재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에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생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인 학생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8조(예산지원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예산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국학교: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
2. 교육원: 한글학교 수, 학생 수,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등

	- 기타 학생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사정, 학생의 장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 교육부장관은 지원시, 해당 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해당 한국학교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등 고려 가능
--	---

□ 아울러 최근 5년간(2021~2025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지원액은 요청액의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지원을 통해 한국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국학교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요청액(USD)	4,228,249	4,257,412	4,166,254	3,627,327	3,651,762
지원액(USD)	1,384,983	1,343,059	1,341,085	1,343,844	1,297,101
지원비율(%)	32.7	31.5	32.1	37.0	35.5
예산액(백만원)	1,625	1,519	1,730	1,747	1,790

주: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4331-300) 사업 예산에서 지원

자료: 교육부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학비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소재 국별로 경제여건, 사회보장 체계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이고 구체적인 저소득층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학교장이 현지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자체 저소득층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 1

재외한국학교 현황

학교명	대한민국 정부 인가일	학생 수 (학급 수)					전임 교원 수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교장	교감	계
동경한국학교	'62.03.16.		710(18)	348(9)	342(9)	1,400(36)		40	16	17	1	2	76
교토국제학교	'61.05.11.			29(3)	136(9)	165(12)			5	9	1	2	17
오사카금강학교	'61.02.24.		160(6)	68(3)	73(3)	301(12)		8	6	8	1	2	25
건국한국학교	'76.10.01.	55(4)	140(6)	55(3)	152(9)	402(22)	10	10	11	20	1	5	57
소계(4개교)		55(4)	1,010(30)	500(18)	703(30)	2,268(82)	10	58	38	54	4	11	175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27(2)	122(6)	144(6)	210(10)	503(24)	3	18	6	35	1		63
천진한국국제학교	'01.03.05.	21(3)	119(7)	110(6)	117(6)	367(22)	4	18		32	1	1	56
상해한국학교	'99.07.06.		249(12)	275(11)	341(14)	865(37)		30	5	51	1	2	89
무석한국학교	'08.03.01.	38(3)	144(8)	137(6)	130(6)	449(23)	3	13		34	1	1	52
소주한국학교	'13.02.22.	16(1)	115(6)	120(6)	130(6)	381(19)	1	11	10	12	1		35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12(2)	61(6)	32(3)	24(3)	129(14)	4	11		12	1		28
엔타이한국국제학교	'02.09.01.		92(6)	82(3)	92(5)	266(14)		13	8	8	1		30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30.	27(2)	231(10)	235(10)	228(10)	721(32)	3	20	20	21	1		65
웨이하이한국학교	'17.10.24.		136(6)	79(3)	92(3)	307(12)		13		17	1		31
대련한국국제학교	'03.12.23.	8(1)	57(6)	44(3)	78(4)	187(14)	1	11	10	10	1		33
선양한국국제학교	'06.07.26.		46(6)	31(3)	30(3)	107(12)		10	7	8	1		26
연변한국국제학교	'98.02.19.	3(1)	34(6)	22(3)	24(3)	83(13)	1	9	5	6	1		22
광저우한국학교	'14.02.07.		127(6)	122(6)	144(6)	393(18)		13		27	1	1	42
소계(13개교)		152(15)	1,533(91)	1,433(69)	1,640(79)	4,758(254)	20	190	71	273	13	5	572
타이베이한국학교	'61.10.01.	13(1)	47(6)			60(7)	1	5			1		7
까오슝한국국제학교	'61.01.28.	9(1)	27(6)			36(7)	2	4			1		7
소계(2개교)		22(2)	74(12)			96(14)	3	9			2		14
하노이한국국제학교	'06.03.21.		1,056(31)	642(18)	558(16)	2,256(65)		47	29	34	1	2	113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98.08.04.	41(2)	1,028(30)	500(15)	479(15)	2,048(62)	3	69	34	34	1	2	143
소계(2개교)		41(2)	2,084(61)	1,142(33)	1,037(31)	4,304(127)	3	116	63	68	2	4	256
젯다한국학교	'76.09.18.		11(4)			11(4)		2			1		3
리야드한국학교	'79.04.24.		15(2)			15(2)		2	1		1		4
소계(2개교)			26(6)			26(6)		4	1		2		7
지카르타한국국제학교	'77.04.25.		177(9)	237(9)	334(13)	748(31)		24	22	25	1	2	74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93.02.17.	28(3)	140(6)	64(3)	93(3)	325(15)	6	19	6	17	1	1	50
방콕한국국제학교	'02.02.18.		93(6)	38(3)	47(3)	178(12)		10	5	6	1	1	23
필리핀한국국제학교	'05.07.11.	22(2)	74(6)	45(3)	43(3)	184(14)	4	14	6	7	1	1	33
파라과이한국학교	'92.03.01.	28(3)	43(6)			71(9)	2	6			1		9
아르헨티나한국학교	'95.01.23.	28(4)	58(6)			86(10)	11	15			2		28
모스크바한국학교	'92.02.14.	7(3)	35(6)			42(9)	1	6			1		8
테헤란한국학교	'76.04.30.		4(2)			4(2)		2			1		3
카이로한국학교	'80.04.15.		26(6)			26(6)		6			1		7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12.12.28.	13(1)	55(6)			68(7)	1	6			1		8
프놈펜한국국제학교	'18.08.27.		57(6)	23(3)		80(9)		6	5		1		12
소계(11개교)		126(16)	762(65)	407(21)	517(22)	1,812(124)	25	114	44	55	12	5	255
합 계(16개국, 34개교)		396(39)	5,489(265)	3,482(141)	3,897(162)	13,264(607)	61	491	217	450	35	25	1,279

주: 2025.4.1. 기준

자료: 교육부